

승강기 운행금지

이 승강기는 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 제1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서 아래의 사유로 불합격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재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운영을 중지하여야 합니다.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

현장명:

승강기번호(ID):

불합격 내용:

년 월 일

공단 또는 검사기관의 장

직인

1. 바탕: 노란색
2. 글자: 검은색
3. 사선: 붉은색
4. 크기: 320mm × 220mm
5. 종이질: 백상지(1종) 80g/㎡